

#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: 2024. 3. 14.

### 2. 제안이유

-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(안 제10조의2)
  - 4가구 이상의 규모, 가구당 1천만원 이내, 공공 기반시설에 한함.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,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귀농·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2(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)을 신설하여 귀농·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.

- 지원대상: 4가구 이상의 전원마을 조성 희망 가구
- 지원규모: 가구당 1천만원 이내
- 지원범위: 도로, 상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 등 필요한 공공시설
- 지원기준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귀농·귀촌 희망 인구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.